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457

발의연월일: 2025. 5. 9.

발 의 자: 민형배・이개호・김현정

김문수 · 김동아 · 박지원

이성윤 · 김성환 · 안도걸

장경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속하고 심도 있는 법안 심사를 위해 법안처리 과정에 선입선출(先 入先出) 원칙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현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및 청원의 경우, 일정 기간 후 자동 상정되나, 안건 심사 순서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안건 회부 순서와 무관하게 정치적 합의에 의해 심사 순서를 결정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소위원회 회부 순서를 의도적으로 변경하거나, 소위원회 회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공정 심사를 저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위원회에 회부된 순서대로 안건을 심사해서 가급적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자동 상정 예외규정을 삭제하고, 동시에 소위원회 자동 회부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의안의 공정한 심사와 신속한 처리를 이끌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49조 의2 및 제59조의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순서에 따라 심의 대상 안건을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으로서 위원회의의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회부된 순서에 따라 심사되는 안건과 직접 관련된 안건의 경우
- 2.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
- 3.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우선 심사가 필요한 경우

제59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보는 의안 또는 청원이해당 상정 간주일부터 30일이 지나도록 소위원회에 회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0일의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소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 위원회에 회 부된 안건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9조의2(위원회 의사일정의 작	제49조의2(위원회 의사일정의 작
성기준) ① ~ ③ (생 략)	성기준) ① ~ ③ (현행과 같
	승)
<u><신 설></u>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순서에 따라 심의 대상 안건을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으로
	서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
	다.
	 1. 회부된 순서에 따라 심사되
	는 안건과 직접 관련된 안건
	 의 경우
	2.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
	 안의 경우
	3.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우선
	심사가 필요한 경우
제59조의2(의안 등의 자동 상정)	제59조의2(의안 등의 자동 상정)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되지	①
아니한 의안(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	
도액안은 제외한다) 및 청원은	
제5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30일이 지난 날(청원의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된 후 30일이 지난 날)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본다. <u>다만,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신 설>

	<u><</u> 단서
<u>삭제></u>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상 정된 것으로 보는 의안 또는 청원이 해당 상정 간주일부터 30일이 지나도록 소위원회에 회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0 일의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소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본 다.